

일시	2023. 10. 31.(화) 배포 시부터	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담당	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장 박연서, (02) 6788-4744 추계세제분석관 어수진, (02) 6788-4745
		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 담당	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, (02) 6788-4834 추계세제분석관 김문경, (02) 6788-4836

국회예산정책처, 「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」, 「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」 발간

- 국회예산정책처(처장 조의섭)는 10월 31일(화) 「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」 및 「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」 보고서를 각각 발간·배포했다.

〈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〉

-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기 불확실성 및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 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,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,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소폭 개정이라는 특징이 있다.
 - 주요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확대,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확대,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,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이다.
-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(24~'28년) 누적 4.2조원(순액법 기준 0.6조원)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 - 세목별로는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(△3.1조원)가 가장 컸으며 세부담(귀착) 측면에서는 서민·중산층의 세부담(△3.3조) 감소가 가장 컸다.
 - 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(△3.1조원, 5년 누적)보다는 1.1조원 더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며, 이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 차이(△1.0조원)에 주로 기인한다.

- 또한,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부 주요 항목을 시행령 개정 등 위임입법을 통해 추진하고, 비과세·감면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여건 점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.

〈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〉

-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조세지출 규모는 77.1조원이며, 국세감면율은 16.3%로 법정한도(14.0%)를 2.3%p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.
 - 기획재정부가 9월 재추계한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반영 시 2023년 국세감면율(15.9%)도 법정한도(14.3%)를 1.6%p 초과하며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다.
 - 국세감면율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의 국회 제출, 법정한도 산식 조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.
- 이와 함께 연례적 일몰기한 연장 문제 개선 방안,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,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,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·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.
- 조의섭 처장은 “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 첨: 보도참고자료 1부 /끝.

보도참고자료

2024. 10. 31. (화)

「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」 주요 내용

[세제분석1과 02-6788-4744]

□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

-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른 2023년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('24~'28년) 누적 **△4조 2,176억원(순액법 기준 △6,389억원)**
 - 소득세 △3조 559억원, 법인세 △1,008억원, 부가가치세 △6,102억원
- 정부 세수효과(5년 누적 △3조 702억원)와의 차이 **△1조 1,474억원**
 - 추계 여부에 따른 차이(△1조 322억원), 추계 방법에 따른 차이(△1,152억원)

〈 유형별 세수효과 차이: 5년 누적 〉

(단위: 억원)

세목	세수효과 차이 (NABO-정부, 전체) ①+②	추계 여부 차이 (정부 미추계, NABO 추계) ①	추계 방법 차이 ②
전체	△11,474	△10,322	△1,152
소득세	1,092	△269 -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△215 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△70 등	+1,361
법인세	△7,888	△6,041 -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△5,293 -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△859 -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△61 등	△1,847
부가가치세	△4,575	△4,012 -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△4,012	△563
그 외	△103		△103

-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는 서민·중산층 및 대기업이 클 것으로 예상
 - (개인) 서민·중산층 △5,504억원 > 고소득층 △590억원
 - (법인) 중소기업 △223억원 < 대기업 △1,363억원

□ 세목별 분석 주요내용

<소득세>

○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

- (개정안) 소득요건 상향(4,000→7,000만원) 및 지급액 확대(자녀 1인당 최대 80→100만원)
- (분석의견) 소득재분배 개선 및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, 세수효과(5년간 △2조 6,971억원) 고려 시 출산·양육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의 연계·조합 필요

○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

- (개정안) 사적연금소득 저율·분리과세(3~5%) 기준금액 상향(연 1,200→1,500만원)
- (분석의견) 사적연금 활성화 및 연금수령 촉진을 위해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나, 물가상승 수준 및 수혜대상 범위, 저출산·고령화 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금액 설정 필요

<법인세>

○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확대

- (개정안)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(바이오의약품 분야), 신성장·원천기술 확대(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, 핵심광물 정·제련 기술 등)
- (분석의견) R&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나, 국가전략기술 등 중점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,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경우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의 심의를 통해 법률로 개정할 필요

○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

- (개정안) 기본공제율 2~5%p 상향(대/중견/중소 3/7/10→5/10/15%), 특정 요건* 만족 시 추가공제율 10~15% 신설
※ 총 제작비 중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(시행령 규정 예정)인 콘텐츠
- (분석의견)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 시 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나, 대형 제작사 등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, 제도 인지도 및 실효성이 낮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

<상속세 및 증여세>

○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

- (개정안)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(총 4년)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추가공제(1억원) 신설
- (분석의견) 혼인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나, 최근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및 정책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일 수 있는 점 고려 필요
※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설문조사 결과, 부모세대 79.2%, 자녀세대 56.6% 찬성

○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

- (개정안)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세율(10%) 적용구간 확대(60→300억원), 업종 변경 요건 완화(중분류→대분류)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(5→20년)
- (분석의견)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가업유지 요건 중 업종변경 확대에 따른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

<부가가치세 등>

○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

- (개정안)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(100여개)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
- (분석의견) 반려동물 보육가구수 및 반려동물수가 증가하고, 반려동물 보육가구의 동물병원비 부담수준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, 제도의 조기 시행에 따라 진료비 부담 완화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가능성

○ 맥주·탁주 주세율 물가연동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

- (개정안) 물가연동제 폐지 및 필요시 탄력세율(±30%) 조정
- (분석의견) 물가상승기에 세부담 완화 및 주류 세후가격 안정효과가 기대되나, 증가세 적용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정 세율 설정 방안 및 개정안의 탄력세율 방식이 적절한 대안인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

「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」 주요 내용

[세제분석2과 02-6788-4836]

□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

- 2024년 조세지출예산은 77.1조원으로 전년(69.5조원) 대비 11.0% 증가
 -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.3%로 법정한도(14.0%)를 2.3%p 초과 예상
 - ※ 국세감면율 법정한도: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+ 0.5%p
 - 2024년 총 재정지출(조세지출+재정지출) 734.0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은 10.5%로 2022년(8.5%), 2023년(9.8%) 대비 확대
 - 이는 조세지출 연평균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
 - ※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('22~'24): △1.9%, 조세지출 연평균증가율: 10.2%

□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주요 내용

-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
 - (현황)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2.3%p 초과하였고, 2023년도 국세 수입 재추계 전망치 반영 시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음
 - ※ 2023년 재추계 국세감면율(15.9%)은 법정한도(14.3%)를 1.6%p 초과
 - (개선방안) 국세감면율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항목별 구체적인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「국가재정법」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
-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심화
 - (현황) 정부는 2023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71개 중 58개(3.4조원)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례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
 - ※ 총 일몰도래 항목 중 단순 일몰기한 연장 항목 비율(%):
('19)52.9 ('20)72.2 ('21)62.8 ('22)77.2 ('23)81.7
 - (개선방안)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연례적 일몰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부처 자율평가 보강,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일몰관리 강화 및 심층평가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

○ 조세지출 전망-실적 간 차이 지속

- (현황) 2022년 실적(61.9조원)과 전망(58.9조원)의 차이는 3.0조원(4.9%)으로 과소전망되었으며, 이러한 차이가 지속

※ 전망-실적 오차율(%): ('18)8.9 ('19)5.2 ('20)1.9 ('21)△0.7 ('22)4.9

- (개선방안) 재정 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라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망-실적 간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, 주요 전망 방법과 변수를 공개·검증하고 조세지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

□ 조세지출제도 개선과제 주요 내용

○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

- (현황) 예비타당성평가의 빈번한 면제, 심층평가·조세지출평가서 결과 환류 미흡 등으로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

- (개선방안)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강화, 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위한 국회 보고 절차 마련 등의 방안 모색 필요

○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필요

- (현황) 2024년 총 재정지출(조세지출+재정지출) 734.0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(10.5%)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분석이 필요하나, 연계 저해 요인 존재

※ 저해 요인: 조세지출 항목 276개 중 추정곤란 항목 31개, 예산분류코드 분류 중복 등

- (개선방안) 조세지출-재정지출 연계를 통한 국가재정 운용 효율화 향상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정확성·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, 국가재정운용계획(5년)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연도(2년) 확대 필요

○ 중앙·지방의 이원적 조세지출 관리 개선 필요

- (현황) 국세·지방세 조세지출은 관리방식에 일관성이 없어 국가 조세지출 총량 파악 및 관리·통제에 어려움을 야기

- (개선방안) 단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·감독 장치 마련 필요